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지방시설(건축)서기]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0년 3월 11일

대전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직렬 및 인원

직렬(직류) 및 계급	선발예정 인원	임용기간	직무내용	근무예정지
지방시설 (건축) 8급	2	「지방 공무원법」 제66조에 따른 정년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및 직속기관의 건축분야 시설 사업 관련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태조사 및 예산 계획 수립 - 설계 및 설계 지도감독 - 공사발주,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하자검사, 안전점검 - 내진보강, 석면관리 등 안전관련 업무 ○ 학교공간혁신사업 추진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공간혁신사업 전문가 지원단 구성 및 운영 - 학교공간혁신축진자 인력풀 운영 및 관리 - 학교공간혁신사업 설명회 및 사후 평가 등 관리 ○ 기타 기관(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대전광역시 교육청 (산하기관 포함)

2. 시험일정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예정)	최종합격자발표 (예정)
2020. 3. 25.(수)~3. 27.(금)	2020. 4. 24.(금)	2020. 5. 12.(화)	2020. 5. 19.(화)

※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발표 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확정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최종합격자 발표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dje.go.kr>) “고시/공고” 에 게시하고,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3.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 응시 결격사유

- 최종(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같은 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할 수단이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 바. 안전 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 사.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 ④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응시연령: 18세 이상(2002. 12. 31. 이전 출생자)

○ 거주지 및 성별 제한: 없음

나. 자격요건: 최종(면접) 시험일 기준

직렬(직류) 및 계급	임용 자격 기준									
지방시설 (건축) 8급	아래 각 호의 임용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 조건을 갖춘 사람									
	○ 건축 관련 기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건축 관련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건축 관련 기능사 자격증 소지 후 4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건축 관련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건축직류 관련 대상 자격증)									
	<table border="1"> <tr> <td>기술사</td> <td>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td> </tr> <tr> <td>기능장</td> <td>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td> </tr> <tr> <td>기사</td> <td>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td> </tr> <tr> <td>산업기사</td> <td>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td> </tr> <tr> <td>기능사</td> <td>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td> </tr> </table>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 기사 상위 자격증인 기술사, 기능장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도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										

4.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 판단**
- 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 제4항에 따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일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기준

직렬(직류)	심사요소
지방시설 (건축) 8급	❖ 직무관련 자격증 직무관련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증
	❖ 관련분야 근무경력 응시 자격요건 자격증 취득 후, 채용하고자 하는 직무관련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 관련분야 실무경력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의 국가,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함) 등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만을 인정함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정보기기 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2012.1.1.이전 취득은 1급만 인정), 컴퓨터활용능력 2급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통한 적합성 심사

나. 제2차 시험: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 관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임용시험의 방법)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0. 3. 25.(수) ~ 3. 27.(금) (3일간)

※ 접수시간: 09:00~17:00(12시~13시 제외)

나. 접수장소: 대전광역시교육청 6층 총무과 인사담당

나. 접수방법: 접수기간 및 시간 내 접수장소에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 주소[3523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89(둔산동,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6층 총무과 인사담당]

※ 우편접수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하며, 발송전 담당자(042-616-8553)에게 유선 연락

- 응시원서 서식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사용
- 대리접수는 가능하며, 대리접수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라. 응시수수료: 5,000원

- 방문접수: 대전광역시교육청 1층 NH농협출장소에서 납부고지서 수령 및 응시수수료 납부 후 영수증을 지참하여 원서접수
- 우편접수: 농협 432-01-001025(예금주: 대전시교육청, 입금자명: 응시자성명)로 계좌이체 후 응시원서에 계좌이체 내역 첨부(입금자 확인을 위해 계좌이체 후 반드시 대전광역시교육청 담당자(042-616-8553)으로 연락)

※ 원서접수 기간 내에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 불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시 응시 수수료 면제

6. 제출 서류

구 분	내 용
1.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1호)	○ 《작성요령》에 따라 기재 ○ 응시수수료: 5,000원(접수 시 농협에서 지로 납부)
2. 이력서 1부(별지서식 2호)	○ 경력사항은 관련 분야 경력에 한하여 기재 ※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해 인정
3. 자기소개서 1부(별지서식 3호)	○ A4용지 2매 이내 분량으로 작성
4. 직무수행계획서(별지서식 4호)	○ A4용지 2매 이내 분량으로 작성 ※ 임용예정직에 임용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직무수행계획을 자유롭게 기술
5.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 1부(별지서식 5호)	○ 자필 기재
6. 자격증 사본 1부	○ 응시자격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필수, 원본 지참)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사본 1부(선택, 원본 지참) ○ 기타 자격증 사본 1부(선택, 원본 지참)
7.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이력서에 기재한 전체경력을 근무처별로 재직기간, 직위(급), 담당 업무, 상근·비상근 여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발급 담당자 성명·서명(날인) 및 연락처 등 포함되도록 발급 - 담당업무는 임용예정 관련분야 실무경력임을 판단 할 수 있도록 정확히 기재 - 비상근시간제 근무의 경우 주단위 근무시간을 반드시 기재 - 불명확할 경우 관련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 기술자 경력증명서로 제출 가능 ※ 시험 공고일 이후 발행분 제출
8.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1부	○ 해당자(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제출한 경력증명서의 경력 일치여부 확인용으로 미가입된 경력은 불인정 될 수 있음 (경력사항이 모두 포함되었는지 확인 후 제출) ※ 시험 공고일 이후 발행분 제출
9.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6호)	○ 서명 필수
10.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별지서식 7호)	○ 서명 필수
11. 위임장 1부(별지서식 8호)	○ 응시원서 대리 접수인 경우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로 고정하여 제출**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고,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는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 첨부

7. 합격자 복무 및 처우

- 가. 복무: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함
- 나. 보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

8. 기타 유의사항

- 가.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인사 관련 법규를 준용합니다.
- 나. 원본으로 제출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가 원할 경우 반환하며,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다. 해당분야에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에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라.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마.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합니다.(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
- 바. 본 시험공고는 사정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관련 시험일 7일 전까지** 변경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사.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재공고시 종전 공고의 기 접수자는 재접수한 것으로 간주)
- 아. 시험 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je.go.kr>)를 통해 공고하고, 별도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니 응시자는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시험과 관련하여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042-616-8553)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자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비 고

□ 제출서류 목록

순	서류명	필수 여부	제출여부	
1	응시원서	필수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2	이력서	필수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3	자기소개서	필수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4	직무수행계획서	필수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5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필수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6	(응시자격) 자격증 사본 ※ 원본 지참	필수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사본 ※ 원본 지참	선택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기타자격증 사본 ※ 원본 지참	선택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7	경력증명서(원본)	필수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8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수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9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필수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10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필수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11	위임장	선택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12	기타 증빙서류	선택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 응시자 본인이 서류제출 여부에 “✓” 표시

※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집게를 사용하여 편철(스테이플러, 견출지 사용금지)

【서식 1】

응시원서

본인은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대전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렬 (계급)	지방시설(건축) 8급		(한자)
주민등록 번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소	(우)		※응시수수료 (농협에서 지로 납부)
전자우편			
전화 (휴대전화)			

응시표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렬 (계급)	지방시설(건축) 8급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 번호	-		
20 년 월 일 대전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			

주의사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면접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공고 한 시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렬(계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해당 증명서 첨부

6. 서식 변경 금지

20 . . . 작성자 : (서명)

자 기 소 개 서 (1/2)

《작성요령》 - 내용 중 성명,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항 기재 금지

- ※ 응시분야에 대한 소견, 응시취지, 직무수행방향 및 비전, 현재까지 달성한 업적과 장점(전문성), 성공이나 실패에서 얻은 교훈 등을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
- ※ 분량은 반드시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 글자체 휴먼명조, 글씨크기 13포인트, 줄간격 160, 용지 좌우 여백은 각각 20mm, 상하 여백은 각각 15mm, 머리말, 꼬리말은 각각 10mm로 작성, 단면 인쇄로 출력(서식 임의 변경 금지)

관리번호

20 . . . 작성자 : (서명)

자 기 소 개 서 (2/2)

《작성요령》 - 내용 중 성명,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항 기재 금지

- ※ 응시분야에 대한 소견, 응시취지, 직무수행방향 및 비전, 현재까지 달성한 업적과 장점(전문성), 성공이나 실패에서 얻은 교훈 등을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
- ※ 분량은 반드시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 글자체 휴먼명조, 글씨크기 13포인트, 줄간격 160, 용지 좌우 여백은 각각 20mm, 상하 여백은 각각 15mm, 머리말, 꼬리말은 각각 10mm로 작성, 단면 인쇄로 출력(서식 임의 변경 금지)

관리번호

20 . . . 작성자 : (서명)

직 무 수 행 계 획 서 (1/2)

《작성요령》 - 내용 중 성명,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항 기재 금지

- ※ 시험공고에 명시된 임용예정기관의 담당예정업무와 연계하여 작성
- ※ 분량은 반드시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 글자체 휴먼명조, 글씨크기 13포인트, 줄간격 160, 용지 좌우 여백은 각각 20mm, 상하 여백은 각각 15mm, 머리말, 꼬리말은 각각 10mm로 작성, 단면 인쇄로 출력(서식 임의 변경 금지)

관리번호

20 . . . 작성자 : (서명)

직 무 수 행 계 획 서 (2/2)

《작성요령》 - 내용 중 성명,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항 기재 금지

- ※ 시험공고에 명시된 임용예정기관의 담당예정업무와 연계하여 작성
- ※ 분량은 반드시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 글자체 휴먼명조, 글씨크기 13포인트, 줄간격 160, 용지 좌우 여백은 각각 20mm, 상하 여백은 각각 15mm, 머리말, 꼬리말은 각각 10mm로 작성, 단면 인쇄로 출력(서식 임의 변경 금지)

관리번호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p>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정보주체의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p>	<p>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유식별번호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p>
<p>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경력쟁임용시험 자료로 활용</p> <p>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메일, 학력, 경력, 연락처, 자격증, 병역사항 등 채용시 필요한 제반 정보</p> <p>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달성할 때까지</p>	<p>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경력쟁임용시험 자료로 활용</p> <p>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번호, 자격번호 등</p> <p>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달성할 때까지</p>
<p><input type="checkbox"/> 동의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습니다.</p>	<p><input type="checkbox"/> 동의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습니다.</p>
20 . . . 성명 : (서명, 인)	20 . . . 성명 : (서명, 인)

